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

(앞쪽)

제 호

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

사 진

3㎝×4㎝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
성 명

기 관 명

60㎜×90㎜[백상지 150g/㎡]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

소속/직급:

성 명:

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수입식품위생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기 관 장 명 의 관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수입식품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·수거·검사·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